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선교 · 김소희 · 김예지
김미애 · 박충권 · 김위상
구자근 · 김상훈 · 서천호
윤상현 · 김성원 · 박수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원칙

과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2항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부문”을 “여성·부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과보고서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 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람에 대한 조사·평가가 포함된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 다만, 결과보고서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한다.</p>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p>
<p>③ · ④ (생략)</p>	<p>-----. 다만, 결과보고서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한다.</p>
<p>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p>	<p>-----.</p>

